

「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22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개정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 이유

- 창업보육센터(BI) 지원사업 개편(18.1월)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주체별 역할 재정립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\*을 정비

### 2. 주요 개정내용

- 지방청에서 추진하던 BI 평가를 전문기관(한국창업보육협회)으로 변경함에 따른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재정립(제2조 제3호, 제14조 내지 제16조, 제36조, 제41조)
- 중기부 지정 BI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운영을 희망할 경우 경영평가 대상에서 면제 허용(제25조제4항 신설)
- 정부의 창업정책 등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표(별표4)를 고시로 정하지 않고 직전년도 사업계획에 제시(제25조 제1항)
- 보조금 반환 규정에 반환금 면제 조건 신설(제34조제6항 신설)
- 중기부 지정 BI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BI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

사업자를 변경\*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제4조제4항 신설)

- BI 건물의 신축, 증축 등에 지원한 설립비(최대 30억원)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에 따른 규정 삭제(제10조제1항)
- “보육실” 및 “지원시설” 등 공간에 대한 인정범위 명문화를 위한 용어 정의\*(제2조) 및 자구수정, 인용조항\*\* 변경 등(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, 제25조제1항 및 제3항, 제37조)
- 비아이넷(BI 운영시스템)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용실적 입력현황 점검주기\*를 BI 업무운용상황 보고시기와 동일하게 변경(제39조)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4. 공고방법 :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

5. 의견 제출 : 「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」 개정 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
\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
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(전화 : 042-481-1691, 3968)

\* e-mail : [junpa@korea.kr](mailto:junpa@korea.kr), [hyunsoochan@korea.kr](mailto:hyunsoochan@korea.kr)

붙임 :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신규대조표 1부.

## 운영요령 개정안 신규대조표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제2조(정의)</p> <p>1. ~ 2. &lt; 생략 &gt;</p> <p>3. "<u>관리기관</u>"이란 <u>현장평가·조사, 진도점검 등 창업보육센터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의 효율적 관리·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4. ~ 9. &lt; 생략 &gt;</p> <p>10. "<u>보육 부담금</u>"이란 보육터의 보육(시설 및 장비의 사용, 지원 서비스의 수취 등)에 대한 대가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.</p> <p>11. ~ 13. &lt; 생략 &gt;</p> <p>&lt; 신설 &gt;</p> <p>&lt; 신설 &gt;</p> <p>&lt; 신설 &gt;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1. ~ 2.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 <p>3. "<u>관리기관</u>"이란 <u>창업보육센터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의 효율적 관리·감독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4. ~ 9.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 <p>10. "<u>창업보육 부담금</u>"이란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1. ~ 13.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 <p>13의2. "<u>보육실</u>"이란 <u>보육센터가 창업보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육공간으로 입주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보육공간 또는 입주기업들을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(회의실, 기자재실, 공용생산실)을 말한다.</u></p> <p>13의3. "<u>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</u>"이란 하나의 공간에 다수의 (예비)창업자를 보육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간으로 창업자간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.</p> <p>13의4. "<u>지원시설</u>"이란 보육</p>	<p>사업추진체계 변경에 따른 역할 변경</p> <p>자구 수정</p> <p>보육실, 지원시설, 전용면적, 연면적 등 공간 인정범위 명문화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&lt; 신설 &gt;</p> <p>&lt; 신설 &gt;</p> <p>&lt; 신설 &gt;</p> <p>14. ~ 17. &lt; 생략 &gt;</p>	<p><u>센터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장실, 행정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13의5. <u>“연면적”이란 보육센터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(바닥면적)을 말한다.</u></p> <p>13의6. <u>“전용면적”이란 보육실 면적과 지원시설 면적의 합을 말한다.</u></p> <p>13의7. <u>“공용면적”이란 복도, 계단, 화장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면적을 말한다. (단, 주차장은 제외한다.)</u></p> <p>14. ~ 17.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	
<p>제4조(지정공고) ① ~ ③ &lt;생략&gt;</p> <p>&lt; 신설 &gt;</p>	<p>제4조(지정공고) ① ~ 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④ <u>장관이 지정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육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장관은 사업자 지정요건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	<p>BI운영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방지</p>
<p>제10조(설립비 지원) ①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보육센터 설립비 지원을 사업자당 소요자금의 <u>80/100 범위 내에서 30억원</u>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 또는 확장건립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대응투자분은 현금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기존 건축물의 개·보수를 통해 창업보육센터를 신규 설립 또는</p>	<p>제10조(설립비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100분의 80 범위</u> ----- <u>30억</u> <u>원 한도로</u> -----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자구 수정 및 삭제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확장 건립하는 경우에는 현물 투자분을 대응투자분으로 인정한다. 이 경우 현물투자금액은 기준시가·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하며, 총 대응투자금액의 <u>50/100</u>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③ ~ ⑤ &lt; 생략 &gt;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00분의 50을 ----- ----- ③ ~ ⑤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	자구 수정
<p>제11조(운영비 지원) ① 장관은 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소 이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금액은 당해연도의 지원 실적 및 성과 등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하는 <u>운영평가</u>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보육센터의 운영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센터 개소이전이라도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&lt; 생략 &gt;</p> <p>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<u>운영평가</u>와 관련하여 관리기관, 전문기관 및 보육센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</p> <p>④ &lt; 생략 &gt;</p>	<p>제11조(운영비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 <p>③ ----- ----- <u>경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④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	자구 수정
<p>제14조(사업계획서의 검토·확인 등) ① <u>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</u>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,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</u> 제1항의 사전검토를</p>	<p>제14조(사업계획서의 검토·확인 등) ① <u>전문기관의 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<u>전문기관의 장은</u> ----- ----- -----</p>	자구 수정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위해 제1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.</p> <p>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&lt; 생략 &gt;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	
<p>제15조(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)</p> <p>① <u>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</u>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, 대면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,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.</p> <p>② &lt; 생략 &gt;</p> <p>③ 장관은 <u>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</u> 제출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등을 최종 확정하고,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</u>은 제3항의 선정결과 및 협약안내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⑤ &lt; 생략 &gt;</p>	<p>제15조(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)</p> <p>① <u>전문기관의 장</u>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 <p>③ --- <u>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<u>전문기관의 장</u>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	<p>자구 수정</p> <p>자구 수정</p> <p>자구 수정</p>
<p>제16조(평가위원단) &lt; 생략 &gt;</p> <p>①~③ &lt; 생략 &gt;</p> <p>④ <u>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</u></p>	<p>제16조(평가위원단)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①~③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 <p>④ <u>전문기관의 장</u>은 -----</p>	<p>자구 수정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 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	
<p>제25조(보육센터의 <u>운영실적</u> 평가) ① 장관은 규칙 제17조 제2호에 따라 매년 초 보육센터의 직전사업년도 <u>운영실적</u>을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.</p> <p>② &lt; 생략 &gt;</p> <p>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센터의 <u>운영실적</u>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가·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&lt; 생략 &gt;</p> <p>&lt; 신설 &gt;</p>	<p>제25조(보육센터의 <u>경영실적</u> 평가) ① ----- ----- <u>경영실적</u>을 평가한다. 다만, 평가는 직전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.</p> <p>②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 <p>③ ----- ----- <u>경영실적</u> ----- -----</p> <p>1. ~ 5.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 <p>④ 장관은 <u>창업보육센터사업자</u>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1조의 운영비 및 제12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<u>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사업자는 관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자구 수정</p> <p>창업정책의 적기 반영을 위한 개선</p> <p>재정자립 BI 운영 신설</p>
<p>제34조(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~④ &lt;생략 &gt; ⑤ 보육센터의 운영기간이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의무운영기간에 이르지 못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 의무기간을</p>	<p>제34조(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~④ &lt; 현행과 같음 &gt; ⑤ 보육센터의 운영기간이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의무운영기간에 이르지 못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 의무기간을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일할 계산하여 반환금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&lt;단서 조항 신설&gt;</p> <p>⑥ &lt;생략 &gt;</p>	<p>일할 계산하여 반환금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<u>다만, 제2조제12의2호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보육센터가 자진반납을 신청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해 반환금을 면제할 수 있다</u></p> <p>⑥ &lt;현행과 같음 &gt;</p>	<p>자진반납 신청시 부담금 면제조건 신설</p>
<p>제36조(관리기관) 장관은 보육센터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보육센터 지정자격, 지원사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</u></li> <li>2. <u>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</u></li> <li>3. <u>지원사업의 진도보고서, 단계보고서 등의 검토·확인 및 현장실태조사, 평가</u></li> <li>4. <u>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</u></li> <li>5. <u>관할 보육센터에 대한 관리 및 감독</u></li> <li>6. <u>기타 보육센터 지정·운영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사항</u></li> </ol>	<p>제36조(관리기관)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보육센터 경영평가, 주관기관 선정 평가 등 진행 시 ‘평가위원회’ 참여</u></li> <li>2. ~ 4. &lt; 삭제 &gt;</li> <li>2. <u>관할 보육센터에 대한 관리 및 감독</u></li> <li>3. <u>기타 보육센터 지정·운영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사항</u></li> </ol>	<p>관리기관의 역할 변경</p> <p>호 이동</p>
<p>제37조(전문기관) 장관은 보육센터 역량 제고 및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해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영 제32조제2항 및 제5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11. &lt; 생략 &gt;</li> </ol>	<p>제37조(전문기관) 장관은 보육센터 역량 제고 및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해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영 제32조제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11. &lt; 현행과 같음 &gt;</li> </ol>	<p>인용 오류 정정</p>

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제39조(비아이넷 관리)</p> <p>① ~ ② &lt; 생략 &gt;</p> <p>③ 관리기관의 장은 비아이넷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충실도를 매 분기 말에 점검·평가한다.</p>	<p>제39조(비아이넷 관리)</p> <p>① ~ ②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 <p>③ ----- ----- 매 반기 말에 -----</p>	<p>BI-net DB충실도 점검주기 변경</p>
<p>제41조(이의신청)</p> <p>①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(민법의 기간규정 준용)에 <u>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</u>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&lt; 생략 &gt;</p>	<p>제41조(이의신청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전문기관의 장에게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	<p>자구수정</p>

## 【별표 1】

###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서 (법 제6조제1항제3호 관련)

#### I. 사업자 현황

##### 1. 사업자개요

- 명칭 : 한글, 한자, 영문 명칭을 기재
- 대표자 : 한글·한자성명 및 인적사항 기재(이력서 별도첨부)
- 소재지 : 주소 및 전화·모사전송 번호 표기
- 설립 및 등기일자
- 주요사업 내용

##### 2. 자본금 및 출자방법 (비영리법인인 경우 제외)

- 자본금 (수권 및 납입자본금)
- 발행주식의 종류, 수량, 주당가격
- 출자방법
- 주주구성 및 주주별 소유주식수
  - 대주주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이 포함된 이력서 별도첨부

##### 3. 조직 및 임직원 현황

###### 가. 조직

- 조직도
- 부서별 기능

###### 나. 임직원 현황(외부전문인력 포함)

- 직위, 성명, 생년월일, 학력, 경력, 자격취득 현황 및 주요업무내용 등 작성
  - 전문인력은 주소, 전화번호, 상근 여부를 추가 기재하고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와 이력서를 별도제출

## II. 사업계획

### 1. 사업의 목적 및 중점추진방향

- 지역의 창업 수요 전망, 특화 분야 및 중장기 운용계획 포함

### 2.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소유형태

### 3. 주요사업계획의 추진일정

- ※ 주요사업별로 향후 5년간 계획을 작성

### 4. 창업보육센터의 위치, 입지여건 및 건립계획

-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, 용도지정 현황 포함(도면, 사진 첨부)

### 5. 창업보육센터의 구조·시설·장비 보유 현황 및 확충계획

- 시설장비는 제원 및 용도를 명기 (도면, 사진 첨부)

### 6. 전문인력 보유·활용 현황 및 확충계획

- 입주기업 보육을 전담할 매니저 확보 계획 또는 현황 포함

### 7. 당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입주수요

- 주요 입주대상, 입주기업 선정방법 및 입주기간 포함

### 8.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원 계획

- 창업관련 정보의 수집, 분석·가공 및 공급계획 포함
- 협력기관과의 장비·인력지원등 업무제휴 현황 및 계획 포함  
(근거자료 별도제출)

### 9. 졸업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계획

### 10. 창업보육센터 재정자립 운영 로드맵 계획

- 수익창출 계획, 연차별 재정자립도 달성목표 등을 포함

### 11. 자금수요 및 조달계획

- 관리비·사용료 징수계획 포함
- 재무제표, 수익·비용명세등 별도제출
- 향후 5년간 연도별 수지전망 포함

【별표 2】

지정번호 : 제20 - 00호

##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서

사업자 :  
(운영자) : )  
지정일 :  
센터명칭 :  
센터주소 :  
센터연면적 :  $m^2$   
보육실면적 :  $m^2$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 
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 
증명합니다.

20 년 월 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【별표 3】

구 분	사 유
주의촉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육센터 건립지연으로 지정당시 사업계획서상의 건립 기한 내에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때</li> <li>2.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의 데이터 변경사항의 발생에도 불구하고, 1개월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</li> <li>3. 입주기업과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보육센터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</li> <li>4. 보육센터의 공실률이 30%이상되는 기간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되는 경우</li> <li>5. 운영평가 결과 2년 이상 연속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&lt;신설 2010. 1. 26&gt;</li> <li>6. 사업자가 경미한 의무위반을 했을 때 &lt;신설 2012. 6. 30&gt;</li> </ol>
경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정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건립 기한을 6월이상 초과한 때</li> <li>2. 법 43조제4항 및 영 [별표 3]의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3. 실태조사에 대한 시정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</li> <li>4.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의 데이터가 실제와 다른 것이 발견되어 주의 촉구 후에도 개선조치가 없을 때</li> <li>5. 주의 촉구에 따른 시정처분을 조치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&lt;신설 2010. 1. 26, 개정 2012. 6. 30&gt;</li> <li>6. 사업자의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인해 보육사업의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때 &lt;신설 2012. 6. 30&gt;</li> </ol>
지원중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43조제5항 및 영 [별표 3]의 지원중단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/ol>
지원금 회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정이 취소될 때</li> <li>2.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</li> <li>3. 지원받은 보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</li> </ol>
지정취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43조제4항 및 영 [별표 3]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/ol>

【별표 4】 => 직전년도 사업계획서에 제시, 고시 개정 후 삭제

**창업보육센터 경영실적 평가기준**

평가항목	평가요소		평가 방법	변경전		변경후	
				정량	정성	정량	정성
기관의 전문성 (38)→(30)	기관의 의지 및 관심도 (센터장 전문성 등)		정성				
	전담인력의 전문성	매니저 정규직 비율	정량				
		매니저 근무경력	정량				
		매니저 확보인원	정량				
	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노력	교육 실적	정량				
		전문성 강화 노력	정성				
운영인프라 (18)→(12)	운영자금 확보 실적		정량				
	보육실 회전율		정량				
	보육센터 만족도 측정		정량				
사업계획의 효과성 (38)→(36)	전년도 사업계획의 달성도		정성				
	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적정성		정성				
	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구성		정성				
유관기관 연계 (0)→(20)	지역내·외 유관기관 연계 (혁신센터, TP, VC 등)		정성				
운영실적 관리 (6)→(2)	BI-Net 데이터베이스 관리 충실도		정량				
<b>총 100점</b>							